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http://www.daedeok.go.kr</p>

제2017-83호
2017. 11. 7.(화)

차 례

공 고(1)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866호)1

공 람									
--------	--	--	--	--	--	--	--	--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1. 7. ~ 11. 20.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대 상 자

상 호	성 명	소재지	비고
만남의슈퍼	이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83-6	폐문부재
대승자동차백화점	양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79-5	폐문부재
안정슈퍼	안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82-11	폐문부재
피스메이커선물	김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동 351-1	폐문부재
오복슈퍼	정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37-45	폐문부재
늘푸른동산	김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41-1	폐문부재
정수슈퍼	오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3-9	폐문부재
온돌마루	백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90-2	폐문부재
피스메이커선물	장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75-6	폐문부재
스마일통신	윤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05-1	폐문부재
럭키아울렛마트	김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62-1	폐문부재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7.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7. 11. 20.(금) 18:00까지
- 의견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별관3층 일자리상담실
-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신분증 지참)

8.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과(☎042-608-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